

## **별첨 - 종이표적 채점 규칙**

서문:

2017-2020 ISSF 규칙 시행과 함께, 종이표적 채점 ISSF 규칙은 **ISSF 일반 및 특별 기술 규칙**에서 삭제되고 **ISSF 일반 기술 규칙** 별첨 A로 통합된다. 올림픽 대회 그리고 모든 ISSF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및 주니어 월드컵은 이제 전자 표적 채점으로만 시행된다. 그러나 ISSF는 일부 대륙별 대회와 국내, 지역 및 클럽 수준의 대회에서는 종이표적 사용을 인정한다. 본 종이표적 채점 규칙은 종이표적을 사용하는 대회에서 유효하다. 다른 ISSF 규정은 다른 모든 대회운영에 유효하다.

### **1 종이 표적 및 채점 게이지**

#### **1.1 공식 ISSF 표적**

**1.1.1** ISSF가 승인하는 표적 및 득점 원 치수 및 세부사항은 규칙 6.3.4에 기술되어 있다.

**1.1.2** 표적은 득점 원으로 득점권이 분할되어 있다. 모든 득점원의 치수는 득점원의 바깥선 가장자리(외부 직경)로부터 측정한다.

**1.1.3** ISSF 대회 시, 러닝타겟을 제외하고, 1개의 흑색조준구역이 있는 표적만 사용할 수 있다.

**1.1.4** **시사표적**은 표적 우측 상단에 흑색 대각선으로 선명하게 표시하고 그 선은 일반조도로 적당한 거리에서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25m 속사권총 및 50m 러닝타겟은 제외).

#### **1.2 종이표적 요건 (ISSF 주관대회에만 적용)**

**1.2.1** ISSF 인정 대회 시 사용할 표적이 ISSF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인증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모든 종이표적의 견본(종목별 5장)과 클레이 표적의 견본(본선표적 20개 및 분말이 채워진 결선표적 20개)을 ISSF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모든 표적의 **품질 및 치수**는 ISSF 인정대회 시작 전에 기술대표가 재검사를 한다.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표적만을 사용할 수 있다.

#### **1.3 표적 채점**

**1.3.1** 규칙 1.4(아래)에 부합하는 채점 게이지나 ISSF가 승인한 전자채점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점한다.

**1.3.2** 소총 및 권총 표적은 정수로 채점할 수 있으며 전자표적 사용 시는 소수점으로 채점할 수 있다. 소수점 계산은 한 득점원의 점수를 10등

분하여 0점부터 시작(예: 10.0, 9.0 등), 끝은 9점으로 마감한다 (예: 10.9, 9.9 등).

### 1.3.3

**표적지는** 흑색 조준구역(중앙)이 일반 조도에서 반사되지 않고 명확히 보이는 색상 및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날씨나 기후조건 하에서도 표적지 및 득점원은 그 규격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적지는 과도하게 찢어지거나 뒤틀리지 않고 탄흔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 1.4

### 점수측정용 게이지 및 사용법

탄착점수에 의문이 있을 경우 아래 치수의 플러그 게이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1.4.1

### 25m 센터파이어 권총

측정 외경	9.65mm (+0.05/-0.00mm)
모서리 두께	대략 0.50mm
꽃이의 지름	실탄 구경에 따름
꽃이의 길이	10~15mm
용 도	센터파이어 권총 경기

#### 1.4.2

### 300m 소총

측정 외경	8.00mm (+0.05/-0.00mm)
모서리 두께	대략 0.50mm
꽃이의 지름	실탄 구경에 따름
꽃이의 길이	10~15mm
용 도	300m 소총 경기

#### 1.4.3

### 소구경 소총 및 권총 구경 5.6mm (0.22인치)

측정 외경	5.60mm (+0.05/-0.00mm)
모서리 두께	대략 0.50mm
꽃이의 지름	5.00mm (+0.05mm)
꽃이의 길이	10~15mm
용 도	5.6mm 구경 실탄을 사용하는 모든 종목의 경기

#### 1.4.4

### 4.5mm 내측 게이지

측정 외경	4.50mm (+0.05/-0.00mm)
모서리 두께	대략 0.50mm
꽃이의 지름	4.48m : 외경에서 0.02m를 공제한 수치
꽃이의 길이	10~15mm
용 도	10m 공기소총 및 러닝타겟 표적의 1점 및 2점원 측정, 10m 공기권총 표적의 1점원 측정

#### 1.4.5

#### 공기소총 내10점 측정 위한 공기권총 외측 게이지의 사용방법

	공기권총 외경측정 게이지로 측정한 외곽(모서리)이 공기소총 표적지의 7점원 밖으로 나가 지 않으면 내10점 처리
--	--

#### 1.4.6

#### 공기권총 내10점 측정 위한 공기권총 내10점 외측 게이지의 사용방법

외곽(모서리) 측정 직경	18.0mm (+0.00 / -0.05mm)
외곽(모서리) 두께	대략 0.50mm
꽃이의 직경	4.60mm (+0.05mm)
꽃이의 길이	10~15mm
용도	공기권총 내10점 측정

	공기권총 내10점 외경 측정 게이지로 측정한 외곽 (모서리)이 공기권총 표적지 의 9점원 밖으로 나가지 않 으면 내10점으로 처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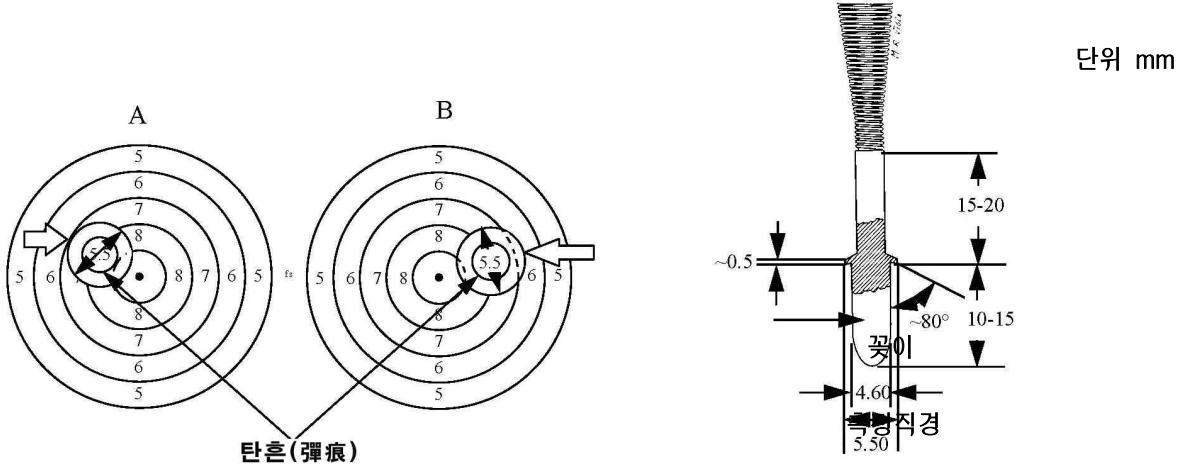
#### 1.4.7

#### 10m 공기소총 및 러닝타겟 표적지용 4.5mm 외측 게이지

측정 외경	5.50mm (+0.00/-0.05mm)
모서리 두께	대략 0.50mm
꽃이의 지름	4.60mm (+0.05mm)
꽃이의 길이	10~15mm
용도	10m 공기소총 및 러닝타겟 표적지의 3-10점원 측정, 10m 러닝타겟 표적지의 내10점 측정

## 1.4.8

### 공기소총 외측 게이지의 사용법



예시 A는 의심이 가는 탄착을 묘사한 것임. 외측게이지로 측정 시, 테두리의 바깥 모서리가 7점선 안에 보이므로 이 탄착은 9점 처리.

예시 B는 의심이 가는 탄착을 묘사한 것임. 외측게이지로 측정 시, 테두리의 바깥 모서리가 7점선을 넘어 보이므로 이 탄착은 8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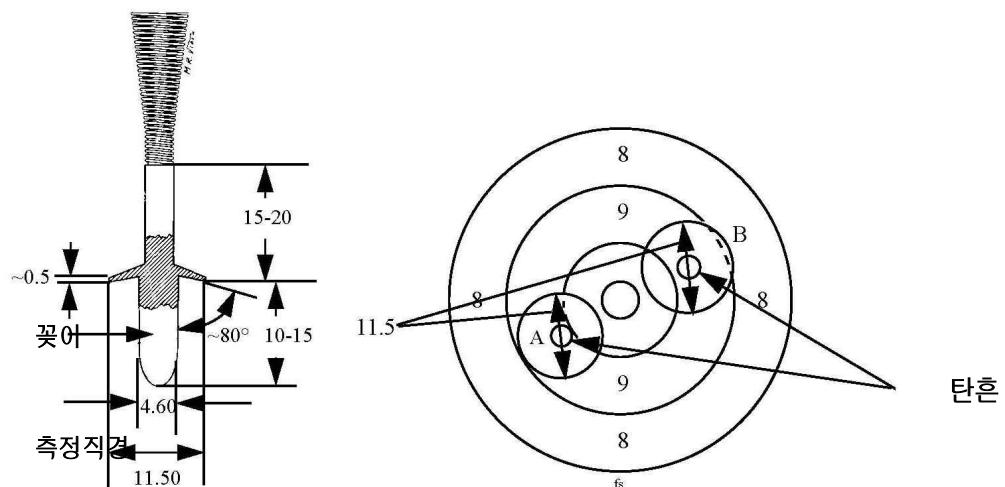
## 1.4.9

### 10m 공기권총 표적지 용 4.5mm 외측 게이지

측정 외경	11.50mm (+0.00/-0.05mm)
모서리 두께	대략 0.50mm
꽃이의 지름	4.60mm(+0.05mm)
꽃이의 길이	10-15mm
용 도	10m 공기권총 표적의 2-10점원 측정

## 1.4.10

### 공기권총 외측 게이지 사용



(예시) A는 외측 게이지로 측정한 의심나는 탄착을 나타냄.

게이지 테두리 바깥 모서리가 9점원 안에 있으므로 10점으로 처리.

예시 B는 외측 게이지로 측정한 의심나는 탄착을 나타냄.

게이지 테두리 바깥 모서리가 9점을 넘어 8점원에 걸쳐 있으므로 9점으로 처리

#### 1.4.11

#### 측사탄 게이지

측사탄 게이지는 편평하고 투명한 플라스틱판으로 한 면에 2개의 평행 선이 새겨져 있다.

- a) 센터파이어 권총(구경 9.65mm) : 안쪽 모서리 간 거리가 11.00mm (+0.05mm-0.00mm)으로 측정한다.
- b) 소구경(5.6mm) 경기 : 안쪽 모서리 간 거리가 7.00mm (+0.05mm-0.00mm)으로 측정한다. (5.6mm 구경의 25m 권총 경기에 사용)

## 2

## 사격장 및 사대 장비

### 2.1

#### 부표적

규칙 6.3.5.2에 따라 50m 및 300m 표적에서는 부표적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컨트롤 시트는 표적 바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새로운 컨트롤 시트는 각 선수별로 매 스테이지에 제공되어야 한다.

### 2.2

#### 25m 전자표적의 부표적

- a) 모든 25m 권총 경기 시 표적권 이외의 탄착 확인을 위하여 부표적을 사용하여야 한다.
- b) 부표적은 최소한 25m 표적 틀(5개 표적)의 전체 높이 및 폭에 준하는 크기로 본사표적의 1m 후면에 균등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부표 적은 본사표적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탄착이 기록될 수 있도록 간격 없이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c) 25m 전자표적의 부표적은 본사표적처럼 반사되지 않는 중간색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 d) 25m 경기 시, 각 선수에게 각 스테이지마다 새로운 부표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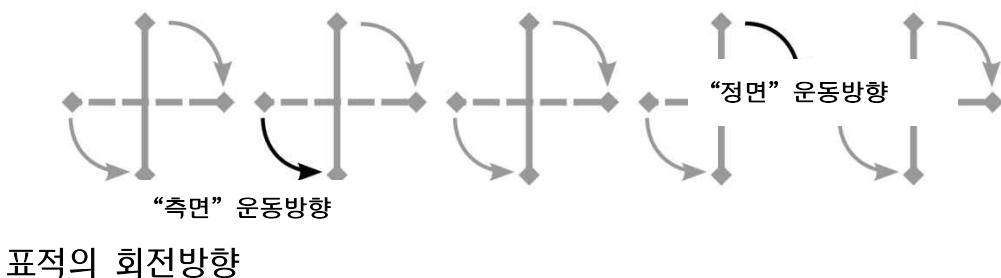
### 2.3

#### 표적교체 시스템

##### 2.3.1

10m 사격장에는 매 발 사격 후 표적을 교체할 수 있게 표적 이동기나 표적 교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2.3.2** 50m 사격장에는 모든 발 사격 후 표적 교체 상자, 이동기 또는 치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2.3.3** 300m 사격장에는 사격 후 고무 룰을 당겨 탄흔을 볼 수 있도록 고무 룰 이동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2.4**
- 기록수 필요 사대 부품**
- 2.4.1** 종이표적일 경우, 기록수용 책상 및 의자 그리고 탄착 확인용 망원경이 준비되어야 한다.
- 2.4.2** 종이표적의 경우 약  $0.5m \times 0.5m$  규격의 기록판 : 제1 기록수 관중을 위하여 비공식적 점수를 기록할 수 있다. 기록판은 관중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이로 인하여 관중이 선수를 볼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
- 2.5 25m 회전표적 설치기준**
- 25m 속사권총 경기를 위한 표적 틀은 5개 표적이 동일한 높이(+1cm)로 구성된 1개 그룹(군)으로 설치하고 그 군의 중앙 표적이 해당 사대를 향하여 동시에 회전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1개 군 내 5개 표적의 상호 중앙 사이의 거리(인접 표적의 회전축간)는 75cm(+1cm)이다.
- 2.5.1** 사격장은 수직축을 기준으로 표적을  $90^\circ (\pm 10^\circ)$  회전시키거나 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5m 권총의 완사 스테이지에서는 고정 표적틀을 사용할 수 있다.
- 선수 쪽으로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0.3초를 초과하면 안된다.
  - 표적이 회전할 때, 선수를 혼란시킬 정도의 진동이 없어야 한다.
  - 위에서 보았을 때, 표적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정면위치로 가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측면위치로 간다.
  - 한 섹션(2개군) 내의 표적들은 모두가 동시에 회전하여야 하며 이는 효율적인 운용과 정확한 타이밍 작동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5.2** 자동회전 및 시간장치는 항상 정확하고 일정한 시간으로 규정된 시간동안 정면에 머무르고 시간 경과 후 측면으로 확실하게 돌아가야 한다. (+0.2초 -0.0초)

- a) 시간은 정면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작되고 측면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 b) 규정시간보다 빠르거나 0.2초 이상 느릴 경우, 사선통제관은 자신이 직접 또는 쥬리의 지시를 받아 사격을 중지시키고 규정에 맞게 시간장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쥬리는 사격개시 또는 재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2.5.3 25m 권총 본선 경기 시, 표적 출현시간 :**

- a) 속사권총 : 8초, 6초, 4초
- b) 스탠다드 권총 : 150초, 20초, 10초
- c) 25m 여자권총 및 센터파이어권총 급사 스테이지 : 매발당 3초간 정면에 출현하고, 측면회전 즉 잠적시간은 7초(허용오차 ±1초)간임.
- d) 모든 종목에서 정면 출현시간의 오차 +0.2초에서 -0.0초 허용

**2.5.4** 표적지를 불이기 위해 견고한 지지판을 사용하는 경우, 지지판의 8점원에 해당되는 영역은 도려내거나 채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카드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경기임원 임무**

#### **쥬리의 임무 - 종이표적(25m 종목에 한함)**

- a) 25m 종목에서 종이표적을 사용 시, RTS실에 파견된 쥬리 또는 권총 쥬리가 각 사선 섹션 또는 각 5-10개 표적당(즉 1표적 통제관 당) 1명은 지정되어야 한다. 쥬리는 표적선에서 표적통제관을 동행하여야 한다.
- b) 쥬리는 정확한 수의 탄착점과 득점원에 근접한 탄착 등의 검사가 시점 전에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c)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명의 쥬리와 감적통제관이 동시에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쥬리 1명이 쥬리장이 되어 필요시 플러그 게이지를 삽입한다.
- d) 감적호에 있는 쥬리는 제2기록수가 기록한 모든 점수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쥬리의 결정사항이 기록지에 잘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 쥬리는 의심되는 사항이 해결되고 점수가 제2기록수에 의해서

정확히 기록 된 후에 치흔 및 탄착 표시용 유색 디스크를  
삽입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3.2

#### **기록수의 임무와 역할**

종이표적 사용 시 기록수는 사대별로 1명씩 임명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기록카드와 소형 기록판에 필요한 내용(선수명, ID번호, 사대번호 및 기타)을 정확하게 기입 또는 확인한다.
- b) 원격조종 표적교환기가 사용될 경우, 망원경을 사용한다. 기록수가 표적교환을 작동할 경우, 표적교환 신호를 보내기 전에 선수가 본인의 탄착을 확인하도록 몇 초 기다려야 한다.
- c) 기록카드와 기록판에 매 발사탄의 예비점수를 기록하고 관중을 위하여 기록수의 책상 위나 옆에 있는 기록카드 및 속보판에 각 발사탄의 임시점수를 기록한다.
- d) 사격한 표적이 기계적으로 사선으로 돌아오는 사격장인 경우, 각 시리즈(10발) 종료 후 즉시 표적들을 수거, 잠금장치가 된 함에 집어넣으면 그 후 인가된 운반요원이 표적 수거함을 RTS실로 운반한다.

### 3.3

#### **표적 및 감적통제관의 임무 및 기능 - 50m 및 300m**

- a) 감적통제관과 사선통제관은 그 인원이 동일하게 배정한다. 감적통제관은 지정된 구간내의 표적들의 신속한 교체, 채점, 표시 및 선수들의 다음 사격을 위한 표적의 설치 등 운영을 책임진다. 감적통제관은:
- b) 표적의 흰 부분에 탄흔이 없는 것과 표적 틀에 탄흔이 있을 때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c) 표적 상에 탄착이 없는 경우, 감적통제관은 인접 표적에 탄착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과 함께 쥬리 및 사선통제관과의 의논을 통하여 해당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d) 자동표적상자가 사용될 경우, 감적통제관은 표적을 상자에 올바르게 넣도록 하고 표적을 꺼내어 RTS실에 보낼 준비를 할 책임이 있다.
- e) 또한 감적통제관은 어떠한 비정상 사항이 생겼을 때 표적에 해당 내용을 표시할 책임이 있다.

### 3.4

#### **25m 표적통제관 - 종이표적**

표적통제관은 각 표적(군)구역별로 또는 5~10개의 표적마다 임명하여야

한다. 표적통제관과 사선통제관은 그 인원이 각각 동일하여야 한다.

표적통제관은:

- a) 부과된 표적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b) 25m 경기 시, 의심 가는 모든 탄착을 쥬리에게 알리고, 확인 후 탄착 및 점수를 시점한다.
- c) 규칙에서 요구에 맞게 표적을 신속, 정확, 효율적으로 채점, 표시, 치흔 및 (또는) 교환한다.
- d) ISSF 규칙에 따라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해결되도록 사선통제관 및 쥬리와 협조한다.

### 3.5

#### 25m 제2기록수 - 종이표적

25m 전종목의 모든 스테이지는 사선에서 공식채점을 한다. 제2기록수는 표적선에 위치하면서 감적통제관이 부르는 점수를 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선 기록수와 제2기록수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그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제2기록수가 기재한 점수가 유효하다.

### 3.6

#### 25m 치흔 담당 - 종이표적

채점 종료 후에 치흔 담당은 지시에 따라 표적 및 통제용지, 부표적을 치흔하거나, 표적 또는 통제용지를 교환한다.

## 4

### 경기절차

#### 4.1

#### 10m 공기소총 및 공기권총 종이표적의 취급

- a) 표적 교환은 사선통제관의 감독 하에, 선수가 직접 한다.
- b) 정확한 표적에 사격하여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으며
- c) 선수는 각 시리즈(10발)가 끝난 직후 편안한 장소에 10장의 표적을 놓고, 기록수는 그 표적들을 안전한 함에 넣어야 한다.  
그 표적함은 인가된 임원이 수거, RTS실로 운반한다.

#### 4.2

#### 50m 소총 및 50m 권총 종이표적의 취급

- a) **자동표적이동기** 또는 교환기가 사용될 경우, 표적교환은 선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기록수가 할 수도 있다.
- b) 누가 교환하든, 정확한 표적에 사격하여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다.
- c) 기록수의 **기록 또는 표적교체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되면 선수는 사선통제관에게 알릴 수 있다. 선수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사선통제관 또는 쥬리가 간주할 경우, 그 상황을 시정하여야 한다.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선수나 팀 임원은 쥬리에게 항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쥬리는 최대 10분까지 시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항의는 경기 종료 30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 4.3

##### 단일 종이표적에서의 초과탄

- a) 선수가 하나의 본사표적에 규정된 발수보다 많이 사격한 경우, 처음 2회까지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 b) 그러나 3회 이상부터는 발생된 시리즈에서 2점씩 감점한다.
- c) 이 경우, 초과탄의 점수는 다음 빈 표적의 점수로 간주하여 채점, 프로그램 및 규칙에 명시한 전체 발수와 동일하게 배분한다. 초과 발사한 만큼 다음 표적에는 사격을 하지 않고 규정 발수에 맞추어야 한다.
- d) 이러한 상황에서의 채점절차는 초과탄의 수를 본래 규정보다 적은 표적으로 옮김으로서 각 표적에 규정된 탄수대로 사격한 것 같이 한다.
- e) 옮겨 배분하려는 초과탄(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역산이 해당선수에게 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점수를 다음 표적의 점수로 또는 최고점수를 앞 표적의 점수로 간주, 채점한다.
- f) 모든 소총 3자세 종목은 하나의 종목으로 간주한다.

#### 4.4

##### 시사 허용

선수가 방해 받거나 다른 사대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 종이 표적 시스템이 새로운 시사 표적의 제공이 불가능하여 허용된 경기 중 시사탄은 다음의 사용하지 않은 경기표적에 발사해야 한다. 사선통제관이나 쥬리의 지시에 따라 2발의 본사탄을 다음 경기 표적에 발사할 수 있다

#### 5

##### 5.1

##### 채점절차

##### RTS실 채점

다음 종목에서 종이표적을 사용할 때는 이들 표적은 RTS실에서 채점하여야 한다.

- a) 10m, 50m 및 300m 소총
- b) 10m 및 50m 권총
- c) 10m 및 50m 러닝타겟
- d) 사격장에서 채점된 모든 경기 또는 스테이지의 점수는 예비점수로 간주한다.

- 5.1.1** RTS 쥬리는 RTS실에서 행하는 채점 및 모든 작업 그리고, 종이표적을 사용 시, 25m 표적선에서 이루어지는 채점과 모든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의심스러운 발사탄의 점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점수를 결정 하며, 문제 또는 기록에 대한 항의에 대하여 처리 및 결정한다.
- 5.1.2** RTS실에서 채점할 모든 종목의 표적지는 사격이 끝난 즉시 자물쇠로 채운 용기에 넣어 적정한 보안 조치 하에 표적선에서 RTS실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 5.1.3** RTS실에서 채점해야 할 종목의 본사 표적지에는 번호가 기입되어 있고 기록카드와 일치하여야 한다. RTS실은 표적지에 정확한 번호를 기입할 책임이 있고, 각 경기를 위하여 수석통제관 또는 다른 사선임원에게 배부하기 전에 표적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1.4** RTS실에서 다음의 채점절차를 다른 임원이 재검하여야 한다.
- 각 발의 점수 결정
  - 내10점의 확인 및 집계
  - 점수의 추가 또는 감점
  - 각 시리즈의 기록 및 총점 집계
  - 각 임원들은 표적지, 기록카드 또는 기록지에 서명을 통하여 본인이 작업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5.2** **점수 결정 - 종이표적**
- 5.2.1** 탄흔이 접선(接線)된 경우, 가장 높은 득점구역 또는 원의 점수로 채점 한다. 탄흔이 높은 득점원의 일부에라도 닿았을 경우, 2개의 점수대 중 높은 점수로 채점한다. 그러한 발사탄은 탄흔 또는 플러그 게이지(해당 탄흔에 삽입)로 어떤 득점원의 바깥부분에 닿았는지 점검하고 점수를 결정한다.
- 본 규칙에서의 예외는 공기소총 표적의 내10점 계산을 할 때다.
- 5.2.2** 논쟁이 있는 점수에 대해서는 게이지 또는 다른 기구를 사용하여 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게이지는 항상 표적을 수평으로 하여 탄흔에 삽입하여야 한다.
- 5.2.3** 다른 탄착이 바로 인접해 있어 플러그 게이지의 정확한 사용이 어려울 경우, 득점원 위치의 재구성이나 중복된 실탄의 탄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편평하고 투명한 재질로 제조된 투명 게이지를 이용,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게이지는 탄착과 득점원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 5.2.4** 2명의 채점 임원이 특정 탄착의 점수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쥬리에게 즉시 결정을 요청한다.

**5.2.5** 플러그 게이지는 어떠한 탄착이든 쥬리가 한번만 삽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게이지를 사용한 표적지에는 해당 채점 임원의 성명 머리글자와 함께 점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 **5.3 25m 종이표적 채점 절차**

쥬리는 모든 채점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2기록수가 관리하는) 채점카드에는 표적통제관 및 표적선 쥬리가 서명하여야 한다. 추가 및 최종기록의 확인을 위하여,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 이 카드의 원본을 RTS실에 보내야 한다.

#### **5.3.1 측사탄 (Skid Shots)**

- a) 표적이 작동하는 동안에 사격된 탄흔은 최대 수평폭이 5.6mm(0.22인치) 구경의 종목에서는 7mm, 센터파이어권총에서는 11mm 이하인 경우에만 점수로 기록된다. 표적의 표면에 보이는 납탄 자국은 무시한다.
- b) 표적 상의 탄흔이 수평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을 경우는, 스키드 게이지로 측정한다. 스키드 게이지 선의 한쪽이 득점원에 닿으면 높은 점수로 처리, 계산한다.

**5.3.2** 사선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표적통제관이 받자마자, 표적이 정면으로 향하여야 한다. 표적통제관은 최소 1명의 쥬리와 함께 각 표적의 탄착 기록을 알리고, 사선 쪽에 있는 기록수를 향하여 큰 목소리로 점수를 말하여야 한다. 기록수는 그 점수를 사선기록부 및 책상 옆의 소형기록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기록수는 표적통제관과 같이 있어야 하며, 표적통제관이 알려준 점수를 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표적의 탄착 위치 및 점수는 선수 및 관중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 a) 25m 속사권총 종목 시 유색으로 탄착을 표시할 원판을 사용한다. 원판은 직경이 30~50mm이어야 하며, 한 면이 적색, 이면이 백색이어야 한다. 원판의 양쪽 면에 직경 5mm, 길이 30mm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에 축이 있어야 한다. 각 5발의 모든 시리즈가 종료되고 채점 및 기록을 발표한 후에, 표적통제관은 원판을 탄착에 꽂아야 한다.
- b) 10점은 적색 면이, 10점 미만은 백색 면이 선수 쪽으로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방식으로 점수를 표시한 후에는 그 시리즈의 총 기록을 사선 기록수 근처에 있는 기록판에 표시하고

제2기록수가 기록하여야 한다. 전체 시리즈의 점수 역시 불러줘야 한다. 그 후에 원판을 떼고 표적을 치흔하여야 한다.

- c) 스탠다드 권총, 25m 권총 및 센터파이어권총 종목에서 대략 300mm 길이의 손잡이 및 직경 3~5cm 크기의 소형 디스크가 있고 한 면은 적색, 이면은 백색인 봉을 이용, 점수 및 탄착 위치를 표시한다. 표적통제관이 기록을 부를 때, 10점은 적색면이, 10점 미만은 백색면이 선수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표적에 사격한 시리즈의 탄은 10점부터 시작, 차례로 불러야 한다.  
모든 발사탄을 개별적으로 표시한 후에는 그 시리즈의 합계기록도 불러줘야 한다.

- d) 시사탄을 표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5.3.3** 표적통제관 및 사선통제관은 기록판의 기록이 표적선에서 기록한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 점수에 대하여 의견이 발생되면, 즉각 해결하여야 한다.

**5.3.4** 탄착점이 표시되고, 기록되자 마자

- a) 표적을 치흔하고 다음 시리즈(속사권총 경기 및 급사 스테이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b) 표적을 교환하고, 다음 시리즈를 위하여 부표적을 치흔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c) 표적 및 부표적을 신속히 제거하고, 다음 선수를 위하여 새로운 표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3.5** 선수는 사선을 떠나기 전에 완결된 기록카드의 총점 옆에 서명하여야 한다.

## **5.4** 동점분류

동점분류는 일반기술규칙 6.15에 따른다.

## **5.5** 종이표적 채점 항의

**5.5.1** 종이표적 사용 시, 선수나 팀 임원이 점수가 부정확하게 채점, 기록 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점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다. 단 그 점수의 결정이 게이지에 의한 것이라면 항의할 수 없다. 특정탄의 점수에 대해서만 항의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의를 하고 별도의 항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5.2** 점수에 대한 항의는 게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채점한 점수에 대해서 또는 기록지에 부정확한 엔트리 또는 기록카드가 나왔을 때에만 가능하다.

**5.5.3**

항의를 할 때는 항의료(50유로)를 납부하여야 한다.

**5.5.4**

종이표적이 사용되고 RTS실에서 채점했을 경우, 팀 임원 또는 선수는 본인이 항의한 표적의 탄흔(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 표적을 만질 수는 없다.

**6**

## **300m 시점 및 탄착 표시 절차**

**6.1**

표적에 사격하였다는 신호를 받자마자 감적수는 탄착을 표시하여야 한다. **탄착의 표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감적호에 있는 감적수가 탄착을 표시하라는 신호를 받으면 감적수는,

- a) 표적을 **내린다**.
- b) 투명 점착지로 구멍을 **메우고**, 최종 탄착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조되는 점착지를 붙인다.
- c) 표적을 **올린다**.
- d) 시점 방법에 따라 탄착의 점수를 **표시한다**.

**6.2**

탄착점수 표시를 위하여 시점봉을 사용할 경우, 시점봉은 그 직경이 200~250mm의 얇고 둥근 판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시점봉은 한 면이 흑색, 이면이 백색이어야 하고 백색 면의 중심 우측 30~50mm 위치에 달린 얇은 막대기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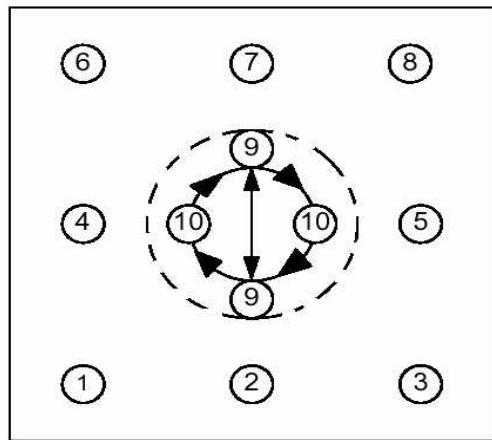
**6.3**

탄착별 시점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림 참조)

- a) 최종 탄착의 위치를 표시한다.
- b) 탄착점수가 1, 2, 3, 4, 5, 6, 7 및 8점이라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올려진 상태에서 표적 틀의 해당부위에 **사선을 향하여 흑색 면**이 보이도록 표시한다.
- c) **9점**인 경우는, 봉의 백색 면으로 표적의 흑점위에서 사선 쪽을 향하여 위아래로 2회 움직인다.
- d) **10점**인 경우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봉의 백색 면을 이용, 사선 쪽을 향해 표적흑점 앞에서 시계방향으로 2회 회전시킨다.
- e) **표적에 명중되지 않은 발**의 표시는, 표적면을 가로질러 옆으로 표시봉의 흑색 면을 3~4회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 f) 탄착이 표적지 위에는 있지만 **득점권 밖에 있을 경우에는**, 우선 상실탄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탄착의 위치를 보여 준다.

## 6.4

### 탄착표시 도형



## 6.5

시사표적은 표적 우측 상단 끝에 흑색 대각선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흑색 선은 해당 거리 및 일반 조명상태에서 육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감적 처리(수작업)한 표적일 경우, 본사 사격을 하는 동안 시사표적이 선수에게 보이면 안 된다.